

산업체위탁교육규정

1997.06.10.제정	1998.06.01.일부개정	1998.11.05.일부개정	1999.09.01.일부개정
2000.01.20.일부개정	<u>2005.03.01.일부개정</u>		

<학사관리팀>

제 1 조 (목적) 본 규정은 신입생 선발에 따른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산업체의 범위) 산업체위탁교육에 있어 산업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
2.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, 방송국
3. 초·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각급학교
4.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(시설강습소)
5. 의료기관, 금융기관, 교육기관
6.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(5인이상 고용하는 산업체)
7. 국민연금 제8조 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제7조 제1항(5인이상)이 규정하는 업체
8. 영농종사자, 농업, 임업, 축산업, 수산업 등
9. 본 대학교와 산학협력 또는 자매결연을 체결한 산업체 및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
10. 자영업자로서 1년 6개월이상 종합소득세 납부자

제 3 조 (위탁형태) 산업체가 단독으로 소정의 인원을 본 대학교에 학과별로 위탁하는 경우를 단독 위탁이라 하고, 둘이상의 산업체가 연합하여 위탁하는 경우를 연합위탁이라 한다.

제 4 조 (위탁학생수 및 학급편성) ①위탁학생수는 전체 입학정원의 50%이내로 선발하되 학과별 입학정원의 100%를 초과할 수 없다.

②위탁교육은 별도학급으로 편성·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, 별도학급의 편성·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해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0%범위내에서 혼합 편성하여 운영한다.(개정 2005.3.1)

③별도학급 편성인원은 20명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단, 부득이 별도학급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20명이내라도 별도학급을 편성·운영할 수 있다.(신설 2005.3.1)

제 5 조 (위탁생에 대한 설치학과) 위탁생에 대한 설치학과는 본 대학교에 설치된 기존학과에 의하되 산업체가 원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본과와 관련된 별도학과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
제 6 조 (위탁생에 대한 교육과정의 편성운영) 위탁생으로 편성된 별도학급에 대하여 적용할 교육과정은 본 대학교와 위탁산업체가 협의하여 새로이 개발 운영할 수 있으며, 이때의 교육과정은 본 대학교에 개설된 학과 계열에 포함되는 과정으로 하고 유사과정도 여건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.

제 7 조 (위탁생선발기준) ①위탁생의 선발기준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자(3학년 편입학

은 전문대 졸업(예정)자 또는 동등학력자)로서 산업체에서 1년 6개월이상 근무중인 자로 한다. (산업체 부설고등학교 산업체 근로 청소년을 위한 고등학교의 야간 특별학급, 야간 고등학교 및 방송통신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에 대해서는 재학기간과 산업체 근무기간이 중복되는 경우라도 그 기간을 산업체 근무기간으로 봄)(개정 2005.3.1)

②위탁생은 산업체에서 추천하여 본 대학교에서 별도로 정한 입시전형절차를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.

③위탁생은 본 대학교에 설치된 학과에 지원할 수 있으나 가급적 근무직종과 연계지원함을 권장토록 한다.

제 8 조 (위탁생에 대한 학사관리) ①위탁생에 대한 학사관리는 본 대학교의 학칙에 의하되 별도학급의 위탁생에 대한 재학년한을 두지 않는다.

②위탁생이 위탁산업체의 동의없이 산업체를 퇴직할 경우는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제적 처리할 수 있다.

제 9 조 (위탁생의 교과목이수) ①위탁생의 교과목이수는 본 대학교 학칙에 의한 졸업소요학점을 기준으로 하고 전공과목에 해당하는 아래 각호의 교과목에 대하여는 해당학과 교수회의 심사에 의하여 총장의 승인을 거쳐 그 해당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.

1. 공인된 직업교육기관에서의 동일분야 전공관련 교과목이수
2. 산업체내 연구소 및 사내훈련 기관에 의한 전공분야 교과목의 이수 및 일정기간의 연수 및 현장 실습 이수
3.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교육기관에 의한 전공 교과목 이수(대학부설 특별과정 및 평생교육과정도 포함)
4. 동일분야 기사 1급이상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해당 시험과목
5. 동일직무에 일정기간 근무경력의 실험, 실습 관련 교과목

제10조 (위탁교육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) ①위탁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는 위탁산업체의 책임하에 본 대학교의 등록금 납부기간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위탁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는 본 대학교 학과의 등록금을 기준으로 하며,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요원 활동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제11조 (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) ①위탁교육 산업체와 본 대학교의 산학협동 교육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동 사항은 아래 각호와 같다.

1.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개발 촉진 및 참여
2. 산업체가 필요한 기술개발 과제의 발굴과 교수에 의한 위탁연구 또는 산업체 임직원이나 연구원과의 공동연구의 추진
3. 정규과정 학생의 현장실습 및 취업의 추진
4. 교육용 실험실습 시설의 공동개발 및 교육용 기자재 기증
5. 학생생활 지도 및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한 협력

②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은 아래 각호와 같이 한다.

1. 산업체내의 강의실 또는 실험실습 시설이 가능한 경우는 위탁생만으로 편성된 별도학급의

강의 또는 실험실습 교육을 산업현장에서 할 수 있다.

- 2.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산업체 임직원 중 적격자를 본 대학교 해당학과 교수회의의 심사를 거쳐 추천하면 총장이 겸임교수 또는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12조 (위탁교육심의위원회 설치운영) ①위탁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본 대학교에 위탁교육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위탁교육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위원은 산업체 임직원 및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,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내로 한다.

③위탁교육심의위원회는 아래 각호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위탁의뢰 사업체 적부에 관한 사항
- 2. 위탁생의 선발기준
- 3. 위탁교육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
- 4. 위탁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5. 산업체의 시설 및 교육자력이 있는 자의 활용에 관한 사항
- 6. 학교와의 산업체 상호 지원에 관한 사항
- 7. 기타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

제13조 (위탁교육자 제출서류) 위탁교육자로 선발된 자는 아래 각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

- 1. 산업체위탁교육계약서 2부(본 대학교 소정양식)(개정 2005.3.1)
- 2. 추천서(지원서)1부 (본 대학교 소정양식)(개정 2005.3.1)
- 3.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(신설 2005.3.1)

제14조 (위탁교육계약서) 위탁교육산업체와 본 대학교 간의 계약서는 별첨과 같다.

제15조 (시행세칙)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 중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학사행정내규와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따른다.

부 칙

본 규정은 1997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1998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